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29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2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내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시설인 '세월호 기억공간'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
- 사용자 : (사)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
-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18.73㎡
- 사용허가 기간 : 2021.11. 3. ~ 2022. 6. 30.(240일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'세월호 기억공간'은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익시설로서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라 이전하는 기존 공익시설의 이전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

-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7조 제5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1.12. 2.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
- 심의결과 : '조건부 적정' (공유재산 사용료 면제)

〈조건사항 -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후
사용료 감면을 추진 할 것〉

※ 작성자 :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이상연 (☎2180-7772)